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의 (가칭)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수탁 결정에 대한 재검토 요청 건의서

「사회서비스원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사업의 우선위탁)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개경쟁의 방법을 통해 사업을 위탁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의 신규 기관,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있는 기관 등에 한해 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제공기관 등을 우선 위탁할 수 있는 조건을 별도의 예외규정으로 정하여 제한한 것은 법률의 근본적 취지가 '공개경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26일 개최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이하 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가 사회서비스원의 (가칭)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우선 위탁에 대해 '적정' 의결하고, 4월 27일 개최된 이사회에서도 수탁 운영(안)을 '가결' 처리한 것은 법률의 취지를 거스른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민간 사회복지계는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가 어떤 사전 설명이나 협의를 하지 않은 점에 상당한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제주형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상생 협력서'(붙임)의 협력사항을 보란 듯이 무시한 사례로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원 이후 1년 6개월 만에 무려 9개의 사회복지기관, 5개 사회복지사업을 수탁 운영하면서 사업성과 보다는 몸집 불리기에만 급급한 사회서비스원에 사회복지관을 우선위탁해야 하는 당위성이 무엇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민간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사회복지분야별 20개 단체로 구성된 '2022 제주 사회복지 아젠다포럼'은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가 금번 사회서비스원의 (가칭)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우선 위탁 결정을 전면 철회하고 '공개경쟁' 방식으로 수탁자가 결정될 수 있도록 재검토 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끝으로, 이러한 요청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우리 민간 사회복지계는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답변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전개할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2023년 5월 2일

「2022 제주 사회복지 아젠다 포럼」 대표단

(수석대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 고 승화

(상임공동대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법인협회장 문성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 김금자

(공동대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장 허순임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협회장 조영숙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시설협회장 이 재 문 제주특별자치도재가노인복지협회장 이성덕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제주지회장 김 재 경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장 문 상 익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협회장 양예홍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 이 민숙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장 김영미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복지협회장 강지 영 허 정 례 한국이동청소년그룹홈혐의회 제주지회장 김 완 숙 제주특별자치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제주지부장 고 민 좌 제주여성인권상담시설협의회장 김 산 옥 제주특별자치도노숙인복지시설협회장 김성자 제주특별자치도정신요양시설협회장 박정해 제주특별자치도지역자활센터협회장 김 두 선



제주형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상생 협력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와 제주지역 사회복지 직능단체와 시설을 대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등(이하 제주사회복지 협의회 등)은 제주자치도의 사회복지발전 및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상생 협력한다.

- 1. 제주형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해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상호 협력한다.
- 2.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 사회복지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3. 상생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상생협의회를 개최하고, 실효성 있는 상생 방안을 마련한다.

제주자치도와 제주사회복지협의회 등은 위 협력사항의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2021년 5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최 승 현

到音频

제주사회복지협의회 등

대 표 고 승화